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1.전주시 완산구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전주부성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도심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관계도서는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3.전주시 고시 제2017-45호로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합니다.
- 가. 해제지역: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 나. 해 제 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2018년 4월 30일

전 주 시 장

1.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가.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3	기린1지구	고도지구	기린공원 서북편	7층 이하	269,000	전북-554 ('97.12.1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13	기린1지구	고도지구	기린공원 서북편	7층 이하	186,450	전북-554 ('97.12.19)	축소
신설	25	전주천변1	고도지구	풍남동 일원 (도토리골교~매곡교)	12m(3층) 이하	36,137	금회	
신설	26	전주천변2	고도지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 (매곡교~한옥마을)	8m(2층) 이하	12,690	금회	
신설	27	동문지구	고도지구	풍남동 일원 (동문길, 은행로 주변)	16m(4층) 이하	41,710	금회	
신설	28	기린3지구	고도지구	기린로변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주변)	24m(6층) 이하	27,230	금회	

나.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기린1지구	고도지구 변경(면적축소) • 면적 : 269,000㎡ → 186,450㎡ (감 82,550㎡)	•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높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사도심지구 내 편입된 고도지구를 해제함
25	전주천변1	고도지구 신설 • 면적 : 36,137㎡	• 전주천 일원의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 형성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함
26	전주천변2	고도지구 신설 • 면적 : 12,690㎡	• 전주천 일원의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 형성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함
27	동문지구	고도지구 신설 • 면적 : 41,710㎡	•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높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풍남동 일원에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함
28	기린3지구	고도지구 신설 • 면적 : 27,230㎡	•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높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린로변에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함

2.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50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	증) 1,516,323	1,516,32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50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 면적 : 1,516,323㎡	•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역사도심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역사성·장소성을 고려 한 도심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

나.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16,323.0	-	1,516,323.0	100.0	
상업지역	1,216,928.8	-	1,216,928.8	80.2	
일반상업지지역	1,216,928.8	-	1,216,928.8	80.2	
주거지역	246,577.8	-	246,577.8	16.3	
제1종일반주거지역	4,562.5	-	4,562.5	0.3	
제2종일반주거지역	213,456.4	-	213,456.4	14.1	
준주거지역	28,558.9	-	28,558.9	1.9	
녹지지역	52,816.4	-	52,816.4	3.5	
자연녹지지역	52,816.4	-	52,816.4	3.5	

2)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양측	편측			
기정	1	팔달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덕진동10호광장 → 교동전주교	118,879 (31,392)	4,802 (2,534)	316	12	전북-125 ('77.7.12)	
기정	3	시민대광장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시청주변	4,307 (1,733)	-	355 (148)	12	전북-49 ('87.4.30)	
기정	4	기린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금암동2호광장 → (구)남중학교	55,134 (12,450)	2,300 (637)	-	12	전북-49 ('87.4.30)	
기정	5	충경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병무청사거리 → 다가교	34,442	1,400	-	12	전북-125 ('77.7.12)	
기정	7	역천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대로3-5 → 대로3-3	19,285 (18,410)	820 (767)	20	12	전북-125 ('77.7.12)	
기정	8	서천로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진덕교 → 완산교	32,970 (8,874)	-	2,760 (428)	12	전북-125 ('77.7.12)	
기정	16	태평로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금암2호광장 → 대로3-7	35,615 (197)	1,480 (16)	-	12	전북-49 ('87.4.30)	
기정	22	풍남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풍남문주위	11,000	-	-	-	전북-125 ('77.7.12)	
기정	38	오복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구)남중 → 약수터	20,168 (6,329)	420 (263)	872	12	전북-112 ('95.6.29)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3) 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심중앙지구	중앙중심지일대	1,541,000 (1,216,928.8)	전북-73 ('77.4.18)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3	15,935.2 (8,586.4)	269,374.2 (132,183.4)	3	305 (192)	3,190 (1,947)	6	2,487 (1,512)	35,828 (21,203)	34	13,143 (6,882)	230,356.2 (109,033.4)

대로	3	7,083 (3,477)	177,075 (86,925)	-	-	-	-	-	-	3	7,083 (3,477)	177,075 (86,925)
중로	5	5,096 (1,596)	67,980 (22,961)	-	-	-	3	2,276 (1,301)	34,140 (19,515)	2	2,820 (295)	33,840 (3,446)
소로	35	3,756.2 (3,513.4)	24,319.2 (22,297.4)	3	305 (192)	3,190 (1,947)	3	211 (211)	1,688 (1,688)	29	3,240 (3,110)	19,441.2 (18,662.4)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	3,000 (1,390)	8호광장 진북로터리	대로1-5 서서학동	일반 도로	남문성당	건설37 ('76.3.27)	
기정	대로	3	7	25-29	주간선	941 (835)	중로3-12	대로3-3	일반 도로		건설447 ('81.12.12)	
기정	대로	3	10	25	주간선	3,142 (1,252)	대로3-11 중노송동	광로2-1중화 산동 545대	일반 도로	예수병원	건설94 ('77.5.28)	
기정	중로	2	2	15	보조 간선	900 (494)	대로3-5 서노송동649-1대	대로1-5 경원동3가 91-3대	일반 도로	전주시청	건설37 ('76.3.27)	
기정	중로	2	3	15-22	보조 간선	616 (47)	7호광장 풍남문	광로3-1	일반 도로		건설37 ('76.3.27)	
기정	중로	2	4	15	보조 간선	760	대로3-5	대로3-3완산교	일반 도로	-	건설37 ('76.3.27)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1,840 (32)	대로3-3 완산교	광로3-1 한백루교동1-1도	일반 도로	대로3-5	건설37 ('76.3.27)	
기정	중로	3	71	12	보조 간선	980 (263)	대로3-10경원동 3가 91-3대	중로3-1 교동 1023-1도	일반 도로	-	건설37 ('76.3.27)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26	경원동3가 28-2도	소로1-34경원동 3가 28-18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1	34	10	국지 도로	39	경원동3가 198도	소로1-406 경원동3가 28-40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1	550	11	국지 도로	140 (27)	1호광장	대로3-5	일반 도로	대로3-5	건고447 ('81.2.12)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0	광로3-1풍남3가 26-5대	풍남동3가10 4도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86	대로3-5전동 198-1대	소로3-52 전동208-4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65	전동 215-1대	전동 216-10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30.2	다가동4가	다가동4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295	고사동 298-3대	고사동225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40	고사동 382대	고사동 360-2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42	고사동 160-1대	고사동181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54	소로1- 경원동3가28대	소로3-240경원동3 가28-25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108	경원동3가 13-8대	소로3-300경원동3 가8-10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44	고사동 488-1대	고사동 473-1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93	고사동 409-13대	고사동 398-3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00	고사동 111-1대	고사동 144-2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122	중앙1가 38-11대	중앙1가 17-3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27	중앙2가 40대	중앙2가 16-10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135	경원1가 23-2대	경원1가 6-6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136	경원2가 7-5대	경원2가 1-3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24	경원동3가 126-48대	경원동3가 111-8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128	경원2가 40-16대	경원2가 57-1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29	6	국지 도로	74	소로3-28 경원2가53-5대	경원2가 292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30	6	국지 도로	71	중로2-2 풍남1가54-3도	소로3-31 풍남동1가49-9도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84	풍남1가 59-7도	풍남1가 50-13도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30 (0.2)	중로3-71 풍남3가76-32대	풍남3가 88-5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65	풍남2가 46-4대	소로3-37 풍남2가44-2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37	6	국지 도로	70	중로2-2 풍남2가36-7대	소로3-36 풍남2가 32-14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114	중로2-4 다가1가59-4대	다가1가 65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52	6	국지 도로	110	소로2-3 전동208-4대	전동 232-2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64	6	국지 도로	83	중로3-1 전동320-13대	전동 286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240	6	국지 도로	24	경원동3가 211도	소로3-8 경원동236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300	6	국지 도로	32	중로2-2 남노송 551-10대	소로3-9 남노송 552-13대	일반 도로	-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1165	6	특수 도로	142	중앙동3가 87	중앙동3가 103-2	보행 전용	-	전주시고사제2015-112호 '15.8.28	
기정	소로	3	1166	6	국지 도로	138	중로3-71 풍남동1가1-17	풍남동1가 11-6	일반 도로	-	전주시고사제2015-112호 '15.8.28	
기정	소로	3	1167	6	국지 도로	125	중로3-71 풍남동1가1-9	풍남동2가 2-2	일반 도로	-	전주시고사제2015-112호 '15.8.28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0	노외주차장	고사동 11-8외 3필지	1,738.9	-	1,738.9	전주62 ('01.10.23)	
기정	74	노외주차장	완산구 전동 187-1일원	2,919	-	2,919	전주82 ('07.9.10)	
신설	109	노외주차장	다가동4가 146-1 일원	-	증) 1,010	1,010	금회	

신설	110	노외주차장	다가동4가 47 일원	-	증) 603.7	603.7	금회	
신설	111	노외주차장	다가동2가 115-1 일원	-	증) 1,512.7	1,512.7	금회	
신설	112	노외주차장	다가동1가 95-3 일원	-	증) 1,007	1,007	금회	
신설	113	노외주차장	전동3가 73-1 일원	-	증) 1,231.8	1,231.8	금회	

○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9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 • 위치 : 다가동4가 146-1 일원 • 면적 : 1,010㎡	•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
110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 • 위치 : 다가동4가 47 일원 • 면적 : 603.7㎡	•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
111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 • 위치 : 다가동2가 115-1 일원 • 면적 : 1,512.7㎡	•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
112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 • 위치 : 다가동1가 95-3 일원 • 면적 : 1,007㎡	•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
113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 • 위치 : 전동3가 73-1 일원 • 면적 : 1,231.8㎡	•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

3) 공간시설(광장) 결정 조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일반광장	경관광장	고사동 오거리앞	6,360	-	6,360	전고178 ('70.04.14)	
기정	7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전동 풍남문주위	5,848	-	5,848	전북135 ('78.05.22)	
기정	57	일반광장	경관광장	완산구 전동 77	2,045.7	-	2,045.7	전주128 ('11.11.18)	

4)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3	중앙 공원	역사 공원	풍납동 일부	49,620 (46,345)	-	49,620 (46,345)	총독403 ('38.05.08)	
신설	189	공원	소공원	고사동 324-14 일원	-	증) 208.3	208.3	금회	

○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9	소공원1	소공원 신설 • 위치 : 고사동 324-14 일원 • 면적 : 208.3㎡	•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이용객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소공원 신설

5)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동부시장	정기시장	경원동3가 90-13	1,517.3	-	1,517.3	전북267 ('80.12.01)	
기정	7	전주백화점	대규모점포	중앙동1가 26-16	1,984.2	-	1,984.2	전북106 ('80.06.19)	
기정	12	코오롱시장	대규모점포	전동3가 136대	2,373.1	-	2,373.1	전북226 ('86.12.09)	

6)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5	성심여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동 280일원	17,942.7	-	17,942.7	전주3 ('09.1.6)	

7)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경원동3가 14-2	31,002	-	31,002	전주6 ('06.2.17)	
신설	13	문화시설	-	중앙동3가 1-1	-	증) 5,689.4	5,689.4	금회	전주객사
신설	14	문화시설	-	중앙동4가 1-6	-	증) 16,117.1	16,117.1	금회	전라감영

○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 위치 : 중앙동3가 1-1 • 면적 : 5,689.4㎡	• 열린객사조성사업에 따라 객사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문화시설로 결정함
14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 위치 : 중앙동4가 1-6 • 면적 : 16,117.1㎡	• 전라감영복원사업에 따라 전라감영을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문화시설로 결정함

○ 건축물의 규모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기정	9	문화시설	-	-	-	
신설	13	문화시설	70% 이하	500% 이하	-	전주객사
신설	14	문화시설	70% 이하	500% 이하	-	전라감영

○ 건축물의 규모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문화시설	• 건폐율, 용적률	• 역사도심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결정함
14	문화시설	• 건폐율, 용적률	• 역사도심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결정함

라. 획지에 관한 결정

1) 대지의 최소개발규모에 관한 사항

구 분	적 용 지 역		계획내용	비고
	권 역	지 구		
최소개발규모	영화의거리권역	영화1, 대동로1, 대동로3	60㎡ 이상	주거지역
	동 문 거 리 권 역	동문2, 동문3, 동문4		
	전통문화전당권역	전당1, 전당2, 전당3, 기린로1, 팔달로2, 충경로3	150㎡ 이상	상업지역
	영화의거리권역	영화2, 팔달로1, 충경로1, 대동로2, 대동로4		
	풍 남 문 권 역	풍남문1, 풍남문2, 풍남문3, 풍남문4, 풍남문5, 풍남문7, 팔달로3, 충경로2		
	감영객사권역	감영객사2, 감영객사4		
최소개발규모 적용예외	동 문 거 리 권 역	동문1, 동문6, 동문7, 팔달로4, 충경로4		
	지 구 단 위 계 획 전 체	• 기존 대지규모가 최소개발규모 미만인 경우 • 이미 최소개발규모 미만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2) 대지의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사항

구 분	적 용 지 역		계획내용	비고
	권 역	지 구		
최대개발규모	영화의거리권역	영화1, 대동로1, 대동로3	400㎡ 이하	주거지역
	동 문 거 리 권 역	동문2, 동문3, 동문4		
	전통문화전당권역	전당1, 전당2, 전당3, 기린로1, 팔달로2, 충경로3	800㎡ 이하	상업지역
	영화의거리권역	영화2, 대동로2, 대동로4, 팔달로1, 충경로1		
	풍 남 문 권 역	풍남문1, 풍남문2, 풍남문3, 풍남문4, 풍남문5, 풍남문7, 팔달로3, 충경로2		
	감영객사권역	감영객사2, 감영객사4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동 문 거 리 권 역	동문1, 동문6, 동문7, 팔달로4, 충경로4		
	지구단위계획구역 전 체	• 최대개발규모 미만으로 필지합병 시 잔여지가 발생하고 잔여지의 규모가 최소개발규모 이내 일 때 잔여지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 •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대지		

구 분	적 용 지 역		계획내용	비고
	권 역	지 구		
		• 기 공동개발 대지 • 특별계획구역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공건축물 중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 공동개발 결정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 최소개발규모 이상 최대개발규모 이하 범위 내 2필지 이상 공동개발 허용 - 기 공동건축된 필지 - 최소개발규모 미달필지 - 부정형 필지, 소유자가 동일한 인접필지 등	
자율적 공동개발 적용예외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부정형(요철형, 과소형) 대지가 발생할 경우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에 맹지가 발생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와 본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별로 입지 가능한 용도를 계획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구로 결정되어 있거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동시 적용

도면표시	적용지역	건 축 물 용 도		비고(위치)
용도1 (주거)	영화1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1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1	전층
용도2 (주거)	동문2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1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1, 불허4	전층
용도3 (주거)	풍남문1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1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층

도면표시	적용지역	건 축 물 용 도		비고(위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전층
용도4 (현세대 문화창출)	영화2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2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전층
용도5 (전통문화산업 역사자원복원)	감영객사2, 감영객사4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3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불허4	전층
용도6 (전통문화산업 역사자원복원)	전당2, 풍납문2, 풍납문3, 풍납문5, 풍납문7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3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전층
용도7 (업무)	전당1, 기린로1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4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점(4751)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전통산업 관련시설 제외)	1층
용도8 (전통문화)	동문1, 동문7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5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불허4	전층
용도9 (전통문화)	전당3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5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전층
용도10 (숙박)	동문4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도면표시	적용지역	건 축 물 용 도		비고(위치)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6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2, 불허4	전층
용도11 (숙박)	풍납문4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7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전층
용도12 (업무상업)	팔달로4, 충경로4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8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불허4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점(4751)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전통산업 관련시설 제외)	1층
용도13 (업무상업)	팔달로1~팔달로3, 충경로1~충경로3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8	전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점(4751)	1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전통산업 관련시설 제외)	1층
용도14 (공구판매)	대동로1, 대동로3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9	1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1	전층
용도15 (공구판매)	대동로2, 대동로4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권장용도	• [별표1. 권장용도]의 권장9	1층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3	전층

도면표시	적용지역	건 축 물 용 도		비고(위치)
용도16	동문3	지정용도	• [별표3. 지정용도]의 지정1	전층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용도17	동문6	지정용도	• [별표3. 지정용도]의 지정2	전층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별표1. 권장용도]

구분	적용지역	권 장 용 도	비고
권장1	영화1, 풍남문1, 동문2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주거
권장2	영화2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게임관련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게임관련시설	현대 문화창출
권장3	감영객사2, 감영객사4, 전당2, 풍남문2, 풍남문3, 풍남문5, 풍남문7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통상업(제조, 유통) 관련시설, 전통문화 관련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통상업(제조, 유통) 관련시설, 전통문화 관련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전통문화상업, 역사자원복원
권장4	전당1, 기린로1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출판사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제외)	업무
권장5	전당3, 동문1, 동문7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주거용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을 위한 한옥형 단독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통상업(제조, 유통) 관련시설, 전통문화 관련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통상업(제조, 유통) 관련시설, 전통문화 관련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 전통호텔업	전통문화

권장6	동문4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시설	숙박
권장7	풍남문4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 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단독주택	숙박
권장8	팔달로1~4, 충경로1~4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업무상업
권장9	대동로1~대동로4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중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칠물, 공구, 창고 및 건설자재 소매점(4751)	공구판매

[별표2.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제31 조의 규정에 따라 도입가능한 용도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를 불허함

구분	적용지역	불 허 용 도	비고
불허1	영화1, 동문2, 대동로1, 대동로3 (제2종 일반주거지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전 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 역 내 불허용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총 세대수가 4세대를 초 과하는 다가구주택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 과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 의 종류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제빵점,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 와 유사한 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게임관련시설 중 뽕기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 과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 의 종류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 는 골프연습장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상점 중 「유통상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 일반계입제공업소 중 성인게임장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구분	적용지역	불허용도	비고
		⑫ 나대지 및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게임물 및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	
불허2	동문4 (준주거지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전주 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불허용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게임관련시설 중 뽑기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게임관련시설 중 뽑기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상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일반게임제공업소 중 성인게임장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바닥면적 150㎡이하 창고 제외)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⑫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⑬ 나대지 및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게임물 및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	
불허3	전당1, 전당2, 전당3, 영화2, 풍남문1, 풍남문2, 풍남문3, 풍남문4, 풍남문5, 풍남문7, 감영객사2, 감영객사4, 동문1, 동문7, 팔달로1, 팔달로2, 팔달로3, 팔달로4, 충경로1, 충경로2, 충경로3, 충경로4, 대동로2, 대동로4 기린로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전주 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제빵점,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게임관련시설 중 뽑기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영화2지구, 팔달로1지구, 충경로1지구 내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게임관련시설 중 뽑기방 및 이와 유

구분	적용지역	불허용도	비고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상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일반게임제공업소 중 성인게임장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탁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바닥면적 150㎡이하 창고 제외) ⑫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⑮ 나대지 및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게임물 및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	사한 시설 허용
불허4	감영객사2, 감영객사4, 동문1, 동문2, 동문4, 동문7 팔달로4, 충경로4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커피숍, 제과·제빵점, 햄버거·도넛 등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일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56122) - 중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56121) - 양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56123)	

구분	적용지역	불허용도	비고
		- 기타 외국계 음식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점(56129)	

[별표3. 지정용도]

구분	적용지역	지정용도	비고
지정1	동문3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지정2	동문6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전동성당

2)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건폐율	비고
권역	지구		
영화의거리권역	영화1, 대동로1, 대동로3	60% 이하	주거지역
동문거리권역	동문2, 동문3, 동문4		
전통문화전당권역	전당1, 전당2, 전당3, 기린로1, 팔달로2, 충경로3	70% 이하 (방화지구 80% 이하)	상업지역
영화의거리권역	영화2, 팔달로1, 충경로1, 대동로2, 대동로4		
풍납문권역	풍납문1, 풍납문2, 풍납문3, 풍납문4, 풍납문5, 풍납문7, 팔달로3, 충경로2		
감영객사권역	감영객사2, 감영객사4		
동문거리권역	동문1, 동문6, 동문7, 팔달로4, 충경로4		

○ 건폐율 완화계획

적용지역	완화요건	완화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내 신규 높이규제지역	•권장용도 건축물 건축 시 •한옥건축 시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 시	70% 이하 → 80% 이하 (방화지구 80% 이하 → 90% 이하)	

3)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권역	지구		

적용지역		용적률	비고
권역	지구		
영화의거리권역	영화1, 대동로1, 대동로3	23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동문거리권역	동문2		
동문거리권역	동문3, 동문4	350% 이하	준주거지역
전통문화전당권역	전당1, 전당2, 전당3, 기린로1, 팔달로2, 충경로3	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영화의거리권역	영화2, 팔달로1, 충경로1, 대동로2, 대동로4		
풍납문권역	풍납문1, 풍납문2, 풍납문3, 풍납문4, 풍납문5, 풍납문7, 팔달로3, 충경로2		
감영객사권역	감영객사2, 감영객사4		
동문거리권역	동문1, 동문6, 동문7, 팔달로4, 충경로4		

4)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는 전면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전면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배제하거나 동시에 적용함

-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고도지구에서처럼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전면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 배제함
- 공공건축물 건축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높이가 결정될 경우 전면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 배제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은 관련법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시장이 고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등)

〈전면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 결정〉

○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8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 적용

○ 대지둘레 길이의 1/8 이상을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

○ 대지둘레 길이의 1/8 미만으로 도로와 접하는 길이가 4m 미만인 경우, 대지의 폭이 4m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한 지점에서 폭 4m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건축선은 해당지점에서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와 수평방향으로 함

적용지역	건축물의 최고높이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건축물의 높이(H)/전면도로폭(D) = 1.0 이하	•전면도로 폭이 12m 미만인 경우 건축물의 최고높이 12m(3층) 이하는 허용 •전면도로 폭이 25m 이상인 경우 전면도로 폭을 25m로 적용

※ 건축물 높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름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 결정〉

적 용 지 역	건축물의 최고높이	비고
서문복원예정지 및 그 경계로부터 24m이내	8m(2층) 이하	
동북성벽 복원 예정지	8m(2층) 이하	
전라감영·객사 2단계 및 부영 복원예정지, 전라감영 1단계 복원예정지 경계로부터 24m이내	8m(2층) 이하	
경기전 경계로부터 24m 이내	8m(2층) 이하	

5)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방향성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권장 -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도로의 방향에 일치하도록 권장	

○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부지 내 기존 한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배치와 형상 및 규모유지 권장 - 기존 골목길이 포함된 공동개발 시 기존 골목길의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6)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

○ 공통(규제) 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 사선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높이 제한에 대한 오작동 방지) - 옛길과 미관지구 내 필로티 설치 금지 -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은 건축물과 일체화하여 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간선도로변에서의 노출을 금지 - 경사지붕의 기울기는 6/10 비율을 사용(허용오차 ±5%)	
진입구 처리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서터는 투시형으로 설치 - 간선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노출 금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상부 설비 등의 처리	옥탑층 및 가로변 설비시설 노출 금지(부득이한 경우 가벽 등으로 차폐)	
색채 및 재료	‘전주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지붕 채도 2 이하, 외벽 채도 6이하) - 원색의 사용은 전체 입면의 5% 이내로 제한 - 외벽면 전체에 대한 도료 마감 금지 ※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의 증개축하는 경우와 ‘영화의거리’ 및 ‘영화의거리-객사감영로 연계사업’ 구간의 건축물은 경관 심의를 통하여 색채 및 재료의 사용범위 조정 가능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시설,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 역사도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경관적 중요도가 높은 다음의 건축물(지역)은 경관심의 결과에 따름

대상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 풍남문, 경기전 주변 도로에 접한 한 커의 필지 - 서문 복원예정부지에 접한 한 커의 필지 - 객사 및 감영·부영 복원예정부지 및 주변도로에 접한 한 커의 필지	- 한옥 권장 ※한옥의 기준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의 한옥에 대한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에 관한 계획에 따름 - 한옥 이외의 형태는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 연면적 300㎡ 이상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외부형태 변경) 시 - 경관심의대상 외 건축물은 경관부서 협의	
옛 길과 접한 한 커의 필지	-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 신축 또는 증개축(외부형태 변경) 시	

○ 공통(권장) 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권장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입면의 분절(재료, 색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하고, 전통담장 및 생울타리 권장 - 담장의 마감재료는 목재, 석재 등의 자연재료 사용 및 녹화기법 도입권장 - 상업용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출입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의 설치 권장 - 옛길 구간에서 신축건축물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파라пет)의 높이는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과 일치하도록 권장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바닥포장	- 바닥포장 시 전통적 재료(석재, 전통 등) 또는 자연친화적인 투수성 재료(잔디 블록, 마사토 등)를 사용하되 복잡한 문양 지양 - 주차공간은 생태블록과 화초류, 관목류 등의 밀식식재로 자연친화적 공간 형성	
한옥과의 관계	인접 부지에 한옥이 있는 경우 인접 한옥과 면하는 입면은 한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부부착물, 설비시설 등 부착 지양	
재료 및 색채	- 광택성 타일 및 금속, 반사유리 등 인공적 재료 마감 지양 2층 이하의 마감재료는 목재, 석재 등의 자연재료 권장 ※「한옥마을 및 4대부성 공공시설물 현황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료 및 색채 권장 - 자연재료는 본연의 무늬와 색채 등을 부각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마감처리 - 자연재료를 모사한 인공재료의 사용 지양 -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외벽의 주조색은 무채색계열을 권장 - 강조색은 ‘한옥마을 및 4대부성 공공시설물 현황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색채 사용 권장	
부착시설물	부착시설물은 가급적 집약, 은폐하고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권장	

○ 한옥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의 한옥에 대한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에 관한 계획에 따름

7) 건축선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한계선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대지경계선을 건축한계선으로 함	
	단독주택밀집지역	골목길 형상의 유지를 위하여 현황도로를 건축한계선으로 함	
벽면한계선	공공보행통로 조성구간	- 기존대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폭원은 현황도로의 폭원 유지 - 특별계획구역 내 신규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 건축물 1층 벽면부의 벽면한계선 돌출 금지 2층 이상의 벽면부 돌출 시 공공보행통로 중심선을 넘어서 수 없음 (필로티형에 한함)	
건축지정선, 담장지정선	옛길	- 기존 옛길 경계를 건축지정선 또는 담장지정선으로 함 - 기존 옛길 형상 유지를 위하여 옛길 노선에 대해 건축벽면 및 담장길이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건축지정선 또는 담장지정선을 지정	
	서문에 면하는 필지	- 서문 경계로부터 2.5m를 이격하여 지정 - 건축벽면 및 담장길이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건축지정선에 설치하여 정연한 경관을 연출하여야 함	

※ 건축선의 세부 위치는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름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 획 내 용	비고
대지 내 조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는 ‘전주시 건축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 내 조경 설치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전주시 건축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름 - 일반다중이용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 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조경·조명시설·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정자·환경조각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	-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 조성 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분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원인 사업시행자가 조성	
공공보행통로	기존 골목길 및 보행연결 필요구간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통로의 폭은 기존 골목길 폭원 유지	

2) 경관(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	수량	업소당 최대 2개 : 유형별 1개	
	크기	- 벽면이용간판 - 가로형:3.0m(건물폭의 80%이내)×0.8m이내 - 세로형:0.6×1.0m이내 - 돌출간판 : 0.8×1.2m이내	기준초과 시 전주시경관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형태	- 창문이용간판 및 실사 이미지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 가로형 간판 및 돌출형 간판은 2층 이하에 설치 - 동일 건축물 내에서 다수의 간판은 별도의 지주형 간판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입면에 설치하는 경우 채널(문자형)간판 또는 연립형으로 설치 권장 - 벽체에 부착하는 문자형 간판의 경우 한국전통문양을 형상화한 배경 권장	
	색상 및 재료	배경은 무채색 및 브라운계열 색상 및 전통적인 재료(목재, 석재 등) 권장 	전주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조명	- 원색계열의 광원 사용 금지 - LED발광선, 조명 튜브, 네온관, 싸인볼 등 부착 금지 -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간판전체 직접조명방식 지양 - 직접조명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	
가로정비사업구간	-	- 전문디자인에 의한 별도계획 수립 - 외국어 금지, 배경색, 글씨색, 글꼴, 사용재료, 조명방법 등을 특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및 가로정비사업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3) 경관(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 규제사항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직접광원의 노출 금지 - 과도한 색상 및 밝기 변화, 반복 점멸 금지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금지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은 금지하며, 건축물 빛의 레벨이 조화로워야 함 - 건축물 조명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에 빛 침해가 없어야 함 -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조화로워야 함 -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등기구는 안전하게 설치 ※ ‘영화의거리’ 및 ‘영화의거리 - 객사감영로 연계사업’ 구간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통하여 색채 및 표현방식의 사용범위 조정 가능	

○ 권장사항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한옥의 경우 매입형 조명기구와 지붕 처마선, 담장 등 한옥의 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권장 - 조명기구의 노출은 최소화하고 친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기구 사용 - 주요가로변은 색온도(3000K:온행로) 광원 사용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간접조명, 라이트 업, 일루미네이션 등으로 차별하고 은은한 가로분위기를 연출 - 일몰시간부터 24시까지 건축물 외부에 투사하는 야간경관조명 사용	

4) 공작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규제사항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나대지 또는 건축물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계입물 및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 - 높이 2m를 초과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분할하여 설치 -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시설,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5)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활용에 관한 사항

○ 권장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역사문화적 건축물 보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제외한 전주시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역사문화자산의 성격 및 장소적 특징에 맞는 보전·활용 - 자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표시 설치 유도 - 기존 역사문화자산과 연계한 공적 장소로 활용	
역사유적터 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대지 내 역사문화유적터(별실유적지)가 있는 경우 표석설치 - 설치위치, 형태 등은 전주시 주무부서와의 협의에 따름	

6)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기존 건축물의 특례	-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게 증축(단,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 - 기존 건축물을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수선하는 경우 -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로 변경(단,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축 또는 증축	

7) 교통처리 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차 없는 거리	영화1지구, 동문2지구, 풍남문1지구	- 차없는 거리 지정 - 영 화 1지구 : 전주객사1, 2길 주변 주택지역 - 풍남문1지구 : 전라감영1길, 풍남문5길 주변 주택지역 - 동 문 2지구 : 동문길 주변 주택지역	골목길 포함
주차장 설치기준 면제지역	영화1지구, 동문2지구, 풍남문1지구 내 차없는 거리와 면하였거나, 해당 가로를 통해 진·출 입이 가능한 대지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 납부 면제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비용납부 면제 - 비주거시설은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장설치의무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대수(면적)를 산정하여 비용납부로 대체	

※ 차 없는 거리 및 주차장 설치기준 면제지역의 세부위치는 결정도면에 따름

8)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1	옥토주차장 특별계획구역	고사동 340-1번지	-	증) 15,150.4	15,150.4	금회	

○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특별1	고사동 340-1번 지	지정목적	• 현재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대규모 대지로서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절한 공공시설 확충하고 우수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전체 지구단위계획 과의 관계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공간적으로 역사적 정체성 강화하고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수립된 것으로서 이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본 특별계획구역이 포함된 영화의거리권역은 영화의거리, 청소년의 거리, 객사 등이 분포된 지역으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된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부합된 개발계획수립이 필요함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2. 불허용도]의 불허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전면 도로폭원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개발 방향	• 행위제한 완화 - 용도 :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하여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완화함 - 높이 :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전면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완 화	• 완화조건 ① 권장용도(영화관련시설, 청소년관련시설, 미술관, 역사관 등 문화예술기능 포함 시설) 수용 시 ② 주차장은 지하화(장애인·비상 주차장 제외)하고 일부를 기부채납하여 공공시설로 제공 시 ③ 성곽지, 해당부지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전시시설 설치 시 ④ 녹지거점이 없는 권역의 특징을 감안하여 지상부의 공공녹지 조성 시 ※ 완화조건의 범위는 상세계획 제안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판단	

9)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완화요건	완화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내 신규 높이규제지역	• 권장용도 건축물 건축 시 • 한옥건축 시 •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 보전 시	• 70% 이하 → 80% 이하 (방화지구 80% 이하 → 90% 이하)	

○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완화요건	완화내용	비고
차없는 거리 조성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건축물 (다가구 제외) 건축 시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건축 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비용 면제 • 비주거시설은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대수(면적)를 산정하여 비용납부로 대체	

○ 접속도로 폭원 확보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완화요건	완화내용	비고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건축 선을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	단독주택밀집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 접속도로 폭원 4m 확보기준 완화 (기존 도로폭 유지)	
옛길에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	옛길과 면하여 건축물 건축 시	• 접속도로 폭원 4m 확보기준 완화 (옛길 도로폭 유지)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완화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완화요건	완화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별도로 정하는 지역	중심지·일반미관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건축선 후퇴 100% 완화	

○ 미관지구 건축선 최저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완화요건	완화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높이완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중심지·일반미관지구 내 • 권장용도 건축물 건축 시 • 한옥 건축 시 •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 보전 시	건축물 최저높이 완화 • 중심지 미관지구 : 3층 이상 → 1층 이상 • 일반 미관지구 : 2층 이상 → 1층 이상	

10)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 1) 도로 :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원 및 녹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 나)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인 경우 제외
-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라.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 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 바.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1) 운동장, 체육시설
 - 2)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 사.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외)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통이 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 3)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5) 2)·3) 및 가·나·마·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 7)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번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4)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6) 생활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 관련규정의 변경 시 그에 따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도서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전주 도시계획시설 (소로3-258, 25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76-1번지 일원의 전주 도시계획시설(소로 3-258, 25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주 시 장

2018년 04월 30일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58	6	국지 도로	218	중노송동 698-18	중노송동 493-14	일반 도로		전라북도고시 1977-125호 77.7.12	
변경	소로	3	258	6	국지 도로	218	중노송동 698-18	중노송동 493-14	일반 도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259	6	국지 도로	28	중노송동 439-22	중노송동 494-14	일반 도로		전라북도고시 1977-125호 77.7.12	
변경	소로	3	259	6	국지 도로	28	중노송동 439-22	중노송동 494-14	일반 도로			선형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258, 259호선	변경 없음	○ 도로 선형 변경 · 연장, 폭 변경 없음	○ 지장물 저축 부분 도로 선형 변경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민원해소

□ 실시계획 작성 내용

구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비고
금회	소로3-258	완산구 중노송동 576-1번지 일원	L=110m B=6m	513	인가일 ~ 2020. 12.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성명 : 전주시장	
	소로3-259		L=28m B=8m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소로3-258호선)

번호	동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2,505	675				
1	중노송	581-14	도	14	2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2	중노송	580-74	도	120	7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	580-46	대	101	27	김재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7, 124동 2404호(연희동)		
4	“	581-6	대	65	19	방문자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81-6	새마을금고	서노송동 677
5	“	581-7	대	66	52	임채정	전북 진안군 부귀면 가정길 22-14		
6	“	581-5	대	218	101	황무업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2가 581-5	전주중앙신 용협동조합	완산구 서노송동 651-5
7	“	580-31	대	10	10	국(기획 재정부)			
8	“	580-32	대	99	32	이복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35-1, 다동401호		
9	“	580-30	대	142	41	문덕순	전남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96	노송신용협 동조합	덕진구 무삼지로 85
10	“	580-29	대	122	64	임영빈	전주시 중노송동 580-29	노송신용협 동조합 임옥빈	덕진구 무삼지로 85 건원왕궁2길 26-10
11	“	580-35	도	278	16	국(건설부)			
12	“	580-26	대	271	75	송명엽	순천시 조곡동 336-11		
13	“	580-27	대	195	31	김용덕	전주시 덕진구 톨못4길 17, 206동 2301호		
14	“	580-25	대	311	2	최성훈	여주군 여주읍 창리 15		
15	“	493-14	대	235	118	김길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93-14	전주농업협 동조합	서노송동 685-1
16	“	493-19	대	258	78	백승정	정읍시 수성3로 39-11, 203호	심은용	정릉천동로 36, 108동 304호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소로3-259호선)

번호	동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310	208				
1	중노송	576-1	대	73	18	사회복지 법인 삼성생명 공익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2	"	493-21	대	66	33	김용미 김현숙	완산구 안행로 150, 103동 201호 완산구 따박골9길 51		
3	"	493-28	대	171	157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고시 제2018-52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77),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14호선의 3개 노선, 광장 50)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노선의 확장 및 선형변경을 위하여 용도지구(미관지구 77),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14호선의 3개 노선, 광장 50)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 주 시 장

2018년 4월 30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m)		폭원 (㎡)	최 초 결정일	비고
						양측	편측			
기정	77	세내길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우림교 ~ 중로1-28호선	61,044	917	3,250	12	전북-186 (2005.7.29.)	
변경					61,490	918	3,285	12		

가-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변경	세내길변 미관지구	○ 연장 및 면적 변경 · 양측연장 : 917m → 918m, 편측연장 : 3,250m → 3,285m · 면적 : 61,044㎡ → 61,490㎡	○ 효천지구 개발과 연계한 대로3-14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미관지구의 선형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4	25	주간선 도로	4,213	중로1-28호선	대로2-5	일반 도로	-	건설206 86.5.8	
변경	대로	3	14	25	주간선 도로	4,213	중로1-28호선	대로2-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1,530	삼천동1가 305-14답	대로3-14 삼천동2가353-8답	일반 도로	-	건고178 70.4.14	
변경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1,510	삼천동1가 305-14답	대로3-14 중인동 1550-7제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28	20	보조간선 도로	4,824	32호 광장 삼천동 383-3답	용복동 산210-1도	일반 도로	-	전주84 96.10.11	
변경	중로	1	28	20	보조간선 도로	4,750	삼천동2가 383-2도	용복동 산210-1도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87	20	보조간선 도로	817	중로1-28 중인동 161-3천	중로2-106 중인동597-2도	일반 도로	-	전주6 06.02.17	
변경	중로	1	87	20	보조간선 도로	787	중인동 1550-21천	중로2-106 중인동597-2도	일반 도로	-		

나-1.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변경	대로 3-14호선	대로 3-14호선	○선형변경 ·연장 : 4,213m → 4,213m ·폭원 : 25m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개설사업에 따라 본 노선을 제방도로와 일치시키고 도로 설계기 준 적용에 의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3호선	중로 1-3호선	○종점변경 ·연장 : 1,530m → 1,510m ·폭원 : 20m	○대로3-14호선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노선 축소
변경	중로 1-28호선	중로 1-28호선	○선형변경 ·연장 : 4,824m → 4,750m ·폭원 : 20m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개설사업에 따라 일 부구간의 선형개량으로 주행안정성 확보에 따른 선형변경
변경	중로 1-87호선	중로 1-87호선	○시점변경 ·연장 : 817m → 787m ·폭원 : 20m	○그럼 중로1-28호선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노선축소

다.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결정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0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완산구 중인동	51,441.0	익산청50 00.03.17	
변경					51,165.0		

다-1.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50	교통 광장	○면적변경 ·면적 : 51,441.0㎡ → 51,165.0㎡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개설사업에 의한 중로1-28호선 선형변경 및 원형교차로 설치 에 따른 교통광장 진출입부 면적변경

2.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실음 생략

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 주 시 장

2018년 4월 30일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2,117	-	22,11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2,117	22,117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117	감) 22,117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²)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자 연	제2종일반	22,117	• 에코시티 조성으로 인근 공동묘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 및 정주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소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40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	증) 22,117	22,117	금회	

○ 결정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결정사유
신 설	140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	공동1	22,117	호성동2가 855-3	22,117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공동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0층 이하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주택의 규 모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 높이,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
			세대수	○400세대 이하
		배 치 및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층수제한구간 - 중층배치구간(11층~15층 이하) 및 중고층배치구간(15층 이상)의 위치와 폭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1	배 치 및 건축선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도록 배치 권장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대지경계선과는 3m, 간선도로와 접한 면은 20m 이격	
			- 부대복리시설을 도로와 건축한계선의 범위내에 조성할 경우, 보행에 필요한 최소 유효폭 3m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1	형 태 및 외 관	○피로티 - 높이 : 2층 이상 또는 지표면에서 5m 이상	
			- 폭 : 8m 또는 주거 동 1호 너비 이상	
			○외장 - 건축물의 3~5층까지는 자연질감으로 마감토록 권장	
			○지붕형태 및 옥상 등 - 경사지붕 권장, 가급적 구조물 형태로 건축	
	공동1	형 태 및 외 관	- 평지붕으로 조성시 옥상녹화 권장	
			- 부대복리시설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평지붕 계획할 경우 옥상녹화 권장	
			○담장 -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을 조성하고 담장의 설치는 불허	
			- 단, 지형적으로 식재 또는 둔덕 조성이 불가능 할 경우 투시형 담장 설치	
	공동1	형 태 및 외 관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 실음 생략

전주시 고시 제2018 - 5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27.

전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전주시 초당길 53 외 3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참 조 ”					

○ 도로명주소 폐지 : 전주시 덕진구 호동길 60 외 129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사유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063-281-2538)에 문의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07.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화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 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신축변경 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덕진구 호성동1가 523-8, 522-8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 53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옛부터 사용하던 마을명을 명칭으로 부여	
2	완산구 풍남동2가 38-6, 40-7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21-3	2018. 4. 27.	건물신축	2008.09.16	전주최서 종대앞에 있는 은행나무로 말미암은 도로명	
3	덕진구 호성동1가 312-3	전주시 덕진구 초포다리로 133-30	2018. 4. 27.	건물신축	2011.02.07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	
4	덕진구 호성동1가 312-2	전주시 덕진구 초포다리로 133-16	2018. 4. 27.	건물신축	2011.02.07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	
5	완산구 평화동2가 916-2	전주시 완산구 평화4길 8-11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도로명칭으로 부여	
6	덕진구 인후동2가 1577-29	전주시 덕진구 명주6길 13-3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	
7	완산구 색장동 34-1	전주시 완산구 은석길 51-5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현재 자연마을인 은석마을의 명칭으로 도로명 부여	
8	덕진구 송천동2가 1326-6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26	2018. 4. 27.	건물신축	2016.12.13	인근 세병호가 위치하여 부여	
9	완산구 서신동 990-10, -11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349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과거의 산 능선을 도로명칭으로 부여	
10	완산구 삼천동3가 582-1	전주시 완산구 호동길 60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현재 자연마을의 명칭으로 도로명 부여	
11	덕진구 금암동 707-17	전주시 덕진구 명륜1길 13-5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인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으로 부여	
12	완산구 중화산동2가 467-5, -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13-6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옛 마을명을 도로명칭으로 부여	
13	완산구 중화산동2가 473-2	전주시 완산구 신촌1길 16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과거의 지명을 도로명칭으로 부여	
14	덕진구 송천동1가 443-71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86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현재 법정동명을 명칭으로 부여	
15	덕진구 송천동2가 1323-5, -6	전주시 덕진구 백석동로 11	2018. 4. 27.	건물신축	2016.12.13	옛부터 사용하는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	
16	덕진구 진북동 1031-19	전주시 덕진구 벚꽃3길 9-15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자연적 특성을 명칭으로 부여	
17	완산구 상림동 762-9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55-42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역사적인 인물명을 명칭으로 부여	
18	덕진구 전미동1가 산23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173	2018. 4. 27.	건물신축	2009.07.10	과학산업 단지인 지역성 반영	
19	완산구 중인동 639-1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68-7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현재 행정동인 중인동의 명칭으로 도로명 부여	
20	덕진구 반월동 401-5,397-1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34-1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	
21	완산구 삼천동2가 593-3	전주시 완산구 비야길 64-9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현재 자연마을의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2	완산구 효자동1가 33	전주시 완산구 외철봉4길 15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산 봉우리 이름인 외철봉을 도로명칭으로 부여	
23	덕진구 호성동3가 201-5	전주시 덕진구 호성신중길 27	2018. 4. 27.	건물신축	2011.08.12	옛부터 사용하던 마을명을 명칭으로 부여	
24	덕진구 금상동 877-1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122-1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인근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으로 부여	
25	덕진구 팔복동2가 833-4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36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옛부터 사용하던 마을명을 명칭으로 부여	
26	덕진구 산정동 676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 10-17	2018. 4. 27.	건물신축	2009.07.10	전주시와 진안군 지명 반영	
27	덕진구 동산동 668-1,-6, 725-5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72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옛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	
28	덕진구 인후동1가 811-2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33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역사적인 인물명을 명칭으로 부여	
29	완산구 서신동 16-15, 16-24, 16-14	전주시 완산구 잭뚝2길 20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과거의 지명을 도로명칭으로 부여	
30	덕진구 화전동 74-5	전주시 덕진구 만경강남로 61-19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만경강 일대임을 반영하여 명칭으로 부여	
31	덕진구 금상동 1266-7	전주시 덕진구 삼거1길 1-12	2018. 4. 27.	건물신축	2009.08.05	옛부터 사용하던 마을명을 명칭으로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사유	비고
1	전주시 완산구 호동길 60	2018. 04. 16	건물 신축	
2	전주시 완산구 명륜1길 13-5	2018. 04. 16	건물 신축	
3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349	2018. 04. 16	건물 신축	
4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13-4	2018. 04. 17	건물 신축	
5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13-6	2018. 04. 17	건물 신축	
6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55-4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7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30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8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36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9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36-11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0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36-23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1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36-29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36-9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3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49-16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4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57-5	2018. 04. 17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5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4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16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6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17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8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18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9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19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10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0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12-1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1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12-3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2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16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3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18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4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19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5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10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6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13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7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15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8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18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29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21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0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23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1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25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2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27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3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28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4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30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5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32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6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34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7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36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38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0-38	2018. 04. 17	만성지구내 건물 부존재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사유	비고
119	전주시 완산구 신촌1길 16	2018. 04. 18	건물 신축	
120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1길 8-4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1	전주시완산구장승배기2길 9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2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2길 11-2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3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2길 11-4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4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2길 11-6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5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2길 11-8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6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5길 20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7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5길 18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8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5길 16-1	2018. 04. 24	조사결과 건물 부존재	
129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72	2018. 04. 25	건물 신축	
130	전주시 덕진구 편원로 233	2018. 04. 25	건물 신축	

전주시공고 제2018-736호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 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19일

전주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나.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 합류점
다. 사업량 : 생태하천 정비 L=6.25km
라. 사업기간 : 2017. 05. ~ 2021. 12.
마.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붙임 편입조서 참조)

가. 토지 및 물건 등 : 전주시 아중천 일원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8년 04월 20일 ~ 2018년 05월 04일(15일간)
나. 열람장소 : 전주시청 견고실은도시과 및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다. 이의신청 : 전주시청 견고실은도시과(☎ 063-281-5167)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8년 7월부터(추후 개별통보)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 입금)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 선정방법 :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각 1인)을 선정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선정
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및 기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6. 기타

가. 토지·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정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고로 갈음함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통일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례 규정을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정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전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함
- 나. 각 조문 제목 및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 정비(안 제1조 내지 제13조)

다.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삭제(안 제11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

- 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과 임기, 연임제한 등 위원회의 구성 규정(안 제11조의2)
-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1조의3)
- 회의 소집 및 개의·의결 등 위원회의 운영 규정(안 제11조의4)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11조의5)
- 위원의 해촉 규정(안 제11조의6)
- 수당 규정(안 제11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의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여성가족과, 전화 281-2341, 팩스 281-5288, 전자우편 sws0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1길 1, 우편번호 561-70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7(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성별영향평가법</u> 」----- ----- <u>성별영향평가</u> 에 ----- ----- ----- -----.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u>성별영향분석평가</u> (이하 “ <u>분석평가</u> ”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성별영향평가</u> ----- ----- -----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분석평가</u> 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성별영향평가</u> ----- ----- -----.
제4조(<u>분석평가 대상</u>) ① 시장은 <u>법 제5조</u> 에 따른 <u>분석평가</u> 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	제4조(<u>성별영향평가 대상</u>) ① -- 「 <u>성별영향평가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u>성별영향평가</u> -----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 <u>성별영향평가</u> ----- -----
제5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분석평가</u> 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 <u>성별영향평가</u>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분석평가</u>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3. <u>성별영향평가</u> ----- -----
4. 그 밖에 <u>분석평가</u> 의 기준에 관하여 <u>시장</u> 이 정하는 사항	4. ----- <u>성별영향평가</u> ----- ----- <u>대통령령</u> 으로-----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u>분석평가</u> 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u>분석평가</u> 를 실시한다. 다만,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u>성별영향평가</u> 의 ----- ----- <u>성별영향평가</u> 를 ---. ----- ----- -----

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u>분석평가서</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 ----- <u>성별영향평가서</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u>분석평가</u> 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u>성별영향평가</u> ----- ----- -----.
제9조(지원) 시장은 <u>성별영향분석평가</u> 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 <u>성별영향평가</u> -- ----- ----- -----.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전주시의 <u>분석평가</u>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u>성별영향평가</u> ----- ----- ----- -----.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u>분석평가</u>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u>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u>성별영향평가</u> ----- ----- <u>성별영향평가위원회</u>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생략)

〈신설〉

-----, <단서 삭제>

② -----, -----.

1. ----- 성별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신설〉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신 설>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

<신 설>

<신 설>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7(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의 이유

- 관련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민간위탁, 인력, 센터의 장, 사업, 예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절차,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의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건강증진과장, 전화 281-6351, 팩스 281-6354, 전자우편 jjang30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우편번호 5503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연계 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의한 기관·단체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위탁의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센터의 보조금 등 예산을 위탁받은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과 장비 등 재산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보고, 서류제출, 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시정 등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시설·장비, 관련 장부 및 비품 등 모든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공고 제2018-747호

전주 도시계획시설(중로2-30)사업 공사완료 공고

전주시 고시 제2017-126(2017. 8. 30.)호로 실시계획 고시한 전주 도시계획시설(중로2-30호선)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2018년 4월 30일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내용

구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치	면적 또는 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비고
금회	중로2-30호선 개설사업	색장동 336번지 일원	L = 120m (B = 9 ~ 20m)	120	17. 08. ~ 17. 12.	주소 : 완산구 바람썰는길 336 성명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원색명화마을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 공고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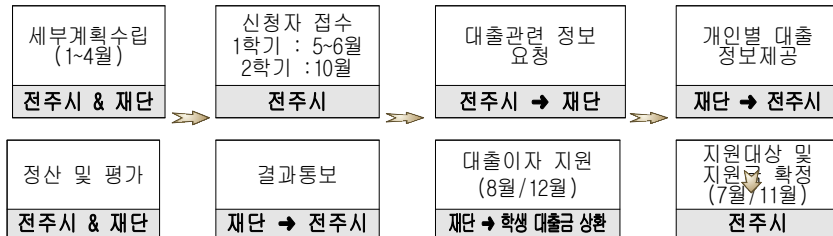
2018년 4월 23일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1. 사 업 명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의 대출이자
- 학자금(생활비 제외) : 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 지원시기 : 매년 2회(8월, 12월) ※ 신청자에 한함
- 지원절차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아님)
- 협조기관 : 한국장학재단

3. 신청자격 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 2018. 5. 1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 또는 휴학생 (휴학 6학기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전주시 외 지역 전출자
- 기타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자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8. 5. 1.(화) ~ 6. 10.(일) 24시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주시 홈페이지 접수페이지)
- 신청자 : 학생 본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본인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기타 첨부서류 없음)

6.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18. 7. 21일경(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전주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결과 공고 : '18. 7. 31일까지
※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신청 시 기입된 전화번호로 통보됨)

7. 유의사항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사항 :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 063-281-5313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전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 명칭 :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 주 시 장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97-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3,831㎡
 -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1개소($V=18,500\text{m}^3$), 펌프시설 1개소, 관로정비 0.7km 등
4.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착 수 일 : 2017년 12월
 - 사업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8층)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063-281-515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전 주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18년 4월 24일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원색명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330
 - 규 모 : 면적289㎡(체험시설, 숙박시설, 제조·판매·가공시설)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박 영 순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원색장길 68-13
4. 사업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해 농촌체험 및 숙박,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등으로 도·농 교류 및 지역 활성화 도모
5. 붙 임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2018년도 단독주택(다가구등 포함)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전 주 시 장

1.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1가 7-1번지 등 38,602호
[완산구 19,972호, 덕진구 18,630호]

나.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다. 열람장소 : 전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8. 4. 30. ~ 5. 29.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전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주민센터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기간 내에 제출**

마. 이의신청서식 비치 : 전주시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

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전주시 고시 제2011-129호(2011.11.11.) 및 제2014-15호(2014.2.7.) 및 제2014-124호(2014.9.15.)호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 및 변경 고시한 동산구역(거점확산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29호선의 10개 노선 및 주차장:2개소)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2018년 4월 30일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비고
소로1-529	동산동 586-1~동산동 566-25	L=435m B=10m	4,850	2011.11. ~ 2015.12.31	주소 : 전주시 노송광장로 10 성명 : 전주시장	
소로1-531	동산동 628-23~동산동 576-3	L=194m B=10m				
소로2- 64	동산동 664-51~동산동 669-1	L=123m B=8m				
소로2-211	동산동 588-12~동산동 571-213	L=138m B=8m				
소로2-902	동산동 669-1~동산동 643-1	L=102m B=8m				
소로2-903	동산동 555-8~동산동565-26	L=180m B=8m				
소로3-1153	동산동 702-38~동산동 570-1	L=240m B=5~6m				
소로3-1154	동산동 571-21~동산동 702-12	L=170m B=6m				
소로3-1155	동산동707-8~동산동 703-8	L=123m B=6m				
소로3-1156	동산동 702-28~동산동 571-95	L=122m B=6m				
소로3-1157	동산동 567-13~동산동 563-7	L=155m B=6m				
주차장97호	동산동 703-15일원	711㎡				
주차장98호	동산동 562-2일원	815㎡				

제20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제20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 4. 27.

전 주 시 장

□ 제20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임 기 : 2018.05.01. ~ 2020.04.30.까지)

구분	분야	성 명		성별	소 속	직 위	비 고
건축 위원회 (35)	건축계획 (4)	1	남해경	남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	윤기병	남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	김준영	남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4	김인순	여	(사)사람과미래	연구원	
	건축구조 (5)	5	이희원	여	김앤이구조컨설팅	소장	
		6	김현기	남	(주)이엔케이안전진단 연구원	대표	
		7	백승대	남	누리구조엔지니어링	소장	
		8	정명채	남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9	임우영	남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설비 (2)	10	정대업	남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1	김상진	남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디자인·미술 (2)	12	엄혁용	남	전북대학교 (미술과)	교수	
		13	유은영	여	(주)디자인그룹 유영	대표	
	사회복지 (2)	14	노영웅	남	하산종합사회 복지관	관장	
		15	박경수	남	전라북도 사회 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구분	분야	성 명		성별	소 속	직 위	비 고
건축 위원회 (35)	건축시공 (2)	16	소승영	남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7	김용현	남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소 방 (2)	18	박재균	남	완산소방서	과장	
		19	김봉길	남	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과장	
	건축사 (9)	20	오요한	남	삼호설계 건축사 사무소	대표	
		21	김희순	여	(주)음그룹 건축사 사무소	대표	
		22	김종태	남	(유)건축사사무소 에 이치건축	대표	
		23	김유천	남	아이아트 건축사 사무소	대표	
		24	이태원	남	에인 건축사 사무소	대표	
		25	조기순	남	건축사사무소 초가건축	대표	
		26	송은정	여	이룸 건축사 사무소	대표	
		27	유영옥	남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대표	
		28	조영수	남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장원	대표	
	조 경 (2)	29	박재철	남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30	안병철	남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시의원 (2)	31	박병술	남	전주시 의회	시의원	
		32	김현덕	남	전주시 의회	시의원	
	건축·도시 분야공무원 (3)	33	양연수	남	생태도시계획과	국장	
		34	김종엽	남	생태도시계획과	과장	
		35	송방원	남	건축과	과장	
교통 영향 평가 통합 심의회 (7)	교 통 (7)	36	김상범	남	시민교통과	팀장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위원
		37	배건태	남	전주덕진경찰서	직원	〃
		38	강민용	남	전주완산경찰서	직원	〃
		39	성락훈	남	도문교통공단 전북지부	부장	〃
		40	조정구	남	도문교통공단 전북지부	차장	〃
		41	박상명	남	(재)한국도시경 제 연구원	수석연구원	〃
		42	백훈기	남	한국기술개발(주)	전무이사	〃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전주시 덕진구 산성동, 우아동3가, 호성동1가 일원에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4. 30.

전 주 시 장

가. 지구(사업)개요

- 명 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3가, 호성동1가 일원
○ 면 적 : 1,065,500㎡

나. 도시관리계획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다. 지구지정 제안자(사업시행자)/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4. 30. ~ 2018. 5. 21.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 ☎ 063-230-6257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 063-281-2475)
전주시 호성동 주민센터 ☎ 063-270-6611)
전주시 우아1동 주민센터 ☎ 063-270-6609)
전주시 우아2동 주민센터 ☎ 063-270-6610)

바.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사.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기 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57),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063-281-2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장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산정동, 우아동3가, 호성동1가 일원	
사업자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람기간	2018. 4. 30. ~ 2018. 5. 21.	
관련지번 (소유지번)		
의견제출자	☐ 소유자 ☐ 관계인 ☐ 기타 (해당사항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 ※ 누구나 작성 가능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1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99호), 소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열람 공고

전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99호), 사회복지시설, 소공원)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2018년 4월 30일

□ 실시계획인가 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비 고
동산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장(99호), 소공 원, 사회복지시설)	덕진구 동산동 571-40번 지 일원	주차장(99호)(732㎡), 소공원(2,270㎡), 사회복지시설 (609㎡)	513백만원 (공사비 418, 보상비 95)	2018.4. ~ 2019.12.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으로 10 성명: 전주시장	

□ 열람사항

- 열람기간: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281-2537), 덕진구 건축과(270-6910)
- 열람내용: 전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9호, 사회복지시설 부지, 소공원) 실시계획 작성 내용
- 의견서제출: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장소 또는 우편, 팩스(281-2615), 이메일(hallojsa@korea.kr)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일원에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4. 30.

전 주 시 장

가. 지구(사업)개요

- 명 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일원
- 면 적: 321,386㎡

나. 도시관리계획사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다. 지구지정 제안자(사업시행자)/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18. 4. 30. ~ 2018. 5. 21.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 063-230-6256)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063-281-2286)

바. 의견제출 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사. 열람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기타: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56), 전주시청 푸른도시조성과(☎063-281-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04. 12 .

전주시 완산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변경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지정) 변경 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m)	도로면적(㎡)	지 목	소유자	비 고
당초	대성동 산71-1	6.0	866	임	박병*	소유자 동의
	대성동 445-1	6.0	64	답		
변경	대성동 산71-1	6.0	866	임		
	대성동 445-1	6.0	54	답		

5. 공고방법 :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팀(☎063-220-5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폐지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폐
지된 위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3.

전주시 완산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폐지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2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폐지)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m)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비 고
용복동 57-7	2.9	53	도	신정*	소유자 동의

5. 공고방법 :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폐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팀(☎063-220-5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4. 16.

전주시완산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지정)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m)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서서학동 153	3.436	59.0	대	백인*,황명*,김준*,박주*	소유자동의

5.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팀(☎063-220-5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8.

전주시완산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지정)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m)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효자동2가 953-3	4	7	전	전미* 전미* 정대* 정미*	소유자 동의

5.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팀(☎063-220-54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사항 변경신청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4. 19.

전주시 완산구청장

- 아 래 -

- 제 목 : 도로지정 변경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 공고(도로지정) 변경 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m)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전	후			
다가동4가 17	4.0m 중 1.15	17.82	18.1	대	고상*,서미*	소유자동의

- 공고방법 :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 관계도서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팀(☎063-220-5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사항 변경신청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4. 23.

전주시 완산구청장

- 아 래 -

- 제 목 : 도로지정 변경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 공고(도로지정) 변경 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m)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전	후			
평화동2가 726-25	3	145	145	답	김*숙	소유자동의 및 지상권 설정 동의
평화동2가 726-12		140	145		조*옥	

- 공고방법 :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 관계도서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팀(☎063-220-5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4.

전주시완산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지정)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m)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비 고
효자동2가 953-3	4.0	2.0	대	전미*,전미*,정대*,정미*	소유자동의

5.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팀(☎063-220-5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7.

전주시완산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지정)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m)	도로면적(㎡)	지목	소유자	비 고
중화산동1가 277-1	1.0	13.0	대	김재*	소유자동의

5.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완산구청 건축과 건축팀(☎063-220-5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4. 13.

전주시덕진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지정)내용

도로위치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도로길이 (m)	소유자	비고
우아동1가 742-2	6	225	40	강준* 황혜*	소유자동의
우아동1가 741				김동*	

5.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덕진구청 건축과 건축민원팀(☎063-270-64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에 따른 도로지정(변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4. 23.

전주시덕진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변경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지정 변경)내용

구분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소유자	비고
변경전	전미동2가 28-17	26.3	0.76	2	박상*	소유자동의
변경후	전미동2가 27-18	26.3	0.4562	12	박상*	소유자동의

5.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덕진구청 건축과 건축민원팀(☎063-270-64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에 따른 도로지정(변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4. 23.

전주시덕진구청장

- 아 래 -

- 제 목 : 도로지정 변경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 공고(도로지정 변경)내용

구분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소유자	비고
변경전	호성동1가 458	11~24	4~6	52	박종*	소유자동의
변경후	호성동1가 458-1	24.4	6	44	박종*	소유자동의
	호성동1가 458-1	9.6	4	2	박종*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관계도서 :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덕진구청 건축과 건축민원팀(☎063-270-64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지정 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에 따른 도로지정(변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4. 27.

전주시덕진구청장

- 아 래 -

- 제 목 : 도로지정 변경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 공고(도로지정 변경)내용

구분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소유자	비고
변경전	우아동3가 206	40	4	25	육수*	소유자동의
	우아동3가 208	40	4	2	김옥*	
변경후	우아동3가 206-1	40	4	27	문도*	소유자동의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관계도서 :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덕진구청 건축과 건축민원팀(☎063-270-64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